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2.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7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제출

나. 상정의결

-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2.18.)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장의 임명(연임)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
 - 이사장후보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비고(임기)
최병식	1951. 1. 23	강남문화재단 이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71, 현대아파트 00동 000호	2019. 1. 28. ~ 2021. 1. 27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현 강남문화재단 제6대(2019.1. 28.~2021.1.27.) 이사장(최병식)의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1)에 따라 제7대(2021.1.28.~2023.1.27.) 이사장을 연임하고자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구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것임.

- 재단의 선임직 이사(이사장 포함) 중 임기가 끝나는 11명을 연임하고자 7명으로 2021.1.15.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임직 이사를 현행 그대로 연임하였고 2021.1.29.~2.2.간 이사회 서면의결로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구의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에는 연임을 위한 이사장 업무평가에 대한 자료나 향후 재단의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계획이 누락된 상태에서 이사장 연임의 필요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더욱이 동의안에는 이사장 임기가 2021.1.28.로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의회 동의 여부에 따라 이사장직 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명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법”) 제6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출연법 제11조⁴⁾에서는 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계약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태에 있음. 또한 해당 법령에서 구청장과 이사장이 상호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이사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법률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적어도 이사장이 비상임인 관계로 구청장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모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출연법은 2014. 9. 25.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12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우리구도 이사장과의 성과계약 등을 규정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1) 조례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토론 요지

○ 지난 이사장 임명 동의안(2019.2.) 시에도 이사장 성과계약 관련 평가 등을 담은 조례가 제정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입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부 관련 문제 제기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끝.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년월일 : 2020. 2.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문화체육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장의 임명(연임)을 위해 강남구의회 동의 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내용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임기
최병식	1951. 1. 23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71, 현대아파트 25동 201호	2021. 1. 28. ~ 2023. 1. 2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프로필

□ 성 명 : 최 병 식

□ 생년월일 : 1951. 1. 23

□ 주 소 :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71
(현대아파트 25동 201호)



□ 학 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 석사
- 상명대학교 대학원 고고학 박사

□ 경 력

- (現) (재)강남문화재단 이사장
- (現) (사)한국잡지협회 이사
- (現) (주)한산문화연구원 대표이사
- (現) 강남향토사연구회 회장
- 2014. ~ 20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2014. ~ 2017. (사)강남문화원 원장
- 2009. ~ 2011.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